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 삭제〉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02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 삭제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9.

다. 회 부 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 「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 삭제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현행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의원안, 의안번호 제2202003호)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32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	<삭 제>

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 · 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 ·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

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
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
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
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
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
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 한우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인 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축산법」을 유지·보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점을 감안할 때,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추진 근거는 「축산법」에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3) 검토의견

- ☐ 개정안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현행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32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 ☐ FTA 등 시장개방 이후 한우농가는 자급률 저하와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주요 축산물 순수익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한우 번식우 마리당 순수익	-365	-1,071	-1,424	-1,465	-585	-192	266	234	214	303	518	563	-409	-1,276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	739	-1,166	-916	-573	-293	316	988	133	-57	-76	58	292	-689	-1,426
젖소 마리당 순수익	1,810	1,508	1,629	1,768	2,422	2,809	2,844	2,747	2,736	2,701	2,661	2,434	1,529	1,731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	40	143	9	-28	84	97	82	86	48	6	47	68	57	23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	-4.0	-1.1	-5.9	-0.3	4.1	2.3	1.8	11.8	-2.2	-1.8	2.5	19.6	7.3	4.8
육계 10마리당 순수익	3.2	1.4	0.9	0.6	1.1	0.6	0.2	1.4	1.2	1.8	0.3	0.6	2.6	1.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4. 8. 20. 제출)

향후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 한.미 FTA에 따른 연도별 소고기 수입관세율 현황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0.0	37.3	34.6	32.0	29.3	26.6	24.0	21.3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8.6	16.0	13.0	10.6	8.0	5.3	2.6	0

- 향후에도 CPTPP¹⁾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²⁾,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우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축산법」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우산업만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협력체제

2) 전국한우협회는 CPTPP 가입 시 15년간 한육우 2조 880억원, 한우 1조 9,890억원의 생산감소를 추정하고 있음

축산 분야 가운데 한우산업에 대해서만 특별법 제정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고, 다른 축종 분야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축산물 생산액】

구 분	생산액(단위 : 10억원)	비중(단위 : %)
돼지	9,650	48.5
한우	6,029	30.3
닭	2,581	13.0
오리	1,076	5.4
육우	305	1.5
염소	167	0.8
젖소	58	0.3
사슴	24	0.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4. 8. 20. 제출), 2022년 가축 기준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하여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6